

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제정	2005. 10. 5	규칙 제 453호
일부개정	2017. 12. 11	규칙 제 894호
일부개정	2019. 5. 9	규칙 제 962호
일부개정	2021. 12. 20	규칙 제1062호
일부개정	2025. 4. 3	규칙 제1160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 12. 11, 2019. 5. 9>

제2조(규제심사 요청) ① 삭제 <2021. 12. 20>

② 「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규제의 신설·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조례·규칙 등을 제·개정하기 전에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1, 2019. 5. 9, 2021. 12. 20>

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용인시 조례·규칙심의회 의 심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1, 개정 2021. 12. 20>

1. 규제심사요청서(별지 제1호서식)
2. 규제영향분석서(별지 제2호서식)
3. 행정기관·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

④ 제3항제2호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1>

1.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에게 공표된 내용
2.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내용
3.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완한 사항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대상은 조례·규칙과 훈령

· 예규· 고시 등으로 한다. <개정 2017. 12. 11, 2019. 5. 9>
[제목개정 2017. 12. 11]

제3조(규제심사) ① 삭제 <2019. 5. 9>

②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, 그 결과를 규제심사청구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5. 9>

③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규제심사청구 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조례·규칙 등의 제·개정할 때에 반영하고,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의2(기존규제의 심사) ①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며,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1. 12. 20]

제3조의3(개선 권고 등)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제심사청구 부서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심사청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규제의 내용
2. 위원회의 심사의견
3.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
4.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

③ 규제심사청구 부서의 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,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

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5. 4. 3]

제3조의4(재심사) ① 규제심사청구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(再審査)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규제심사청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3조의3을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25. 4. 3]

제4조(규제의 등록 및 공표) ① 위원회로부터 제3조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규제심사청구 부서의 장은 규제 심사한 조례·규칙 등이 제·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규제등록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5. 9>

② 위원회는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각 부서별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9. 5. 9>

③ 위원회는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조례·규칙 등의 정비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위촉·임명기준) 조례 제3조제3항에서 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”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1. 대학이나 관련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2. 변호사·공인회계사·건축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

3. 사회·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4. 중소기업의 대표
5. 언론기관의 임·직원
6. 규제에 대한 실무경험이 많은 자

제6조(규제신고센터의 운영) ① 용인시장은 용인시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, 용인시 규제신고센터에 신고된 의견은 자체정비 대상과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<개정 2017. 12. 11>

1.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
2.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앙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정비를 건의

②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신고된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 분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해당 실무부서에 그 의견제출을 의뢰하여야 하며,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수당 등의 지급기준) ① 삭제 <2019. 5. 9>

②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1>

부칙

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2. 11 규칙 제894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5. 9 규칙 제962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2. 20 규칙 제1062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5. 4. 3 규칙 제116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규제심사요청서

(청구부서명)

제 목	담당자(직위)	
관련법규		
규제내용		
문 제 점		
개선방안 및 정비효과		
기 타 건의사항		

[별지 제2호서식]

규제영향분석서

I. 분석대상규제의 개요

1. 규 제 사 무 명	2. 구분					
	신설		강화		존속기한 연 장	
3.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	※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·성명 기재					
4. 근거 법령명 등	※ 조례·규칙·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별로 법령 등 조·항 기재			관 련 규제수		
5. 규제의 구분 및 분석 방법						
6. 종전규제 및 신설(변경)규제의 내용						

II.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(*표시 항목은 필수작성)

1.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(*)
 - (1)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
 - (2)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
 - (3) 규제의 목표설정

2.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(*)
 - (1) 국민·기업·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
 - (2)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

3.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
 - (1)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
 - (2)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
 - (3)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

4.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(*)
 - (1) 규제의 경제·사회적 비용의 분석
 - (2) 규제의 경제·사회적 편익의 분석
 - (3) 비용·편익의 비교 및 검토

5.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
 - (1)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여부
 - (2)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

6.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(*)
 - (1)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·일관성·이해용이성
 - (2)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여부

7. 행정기구·인력 및 예산의 소요
 - (1)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·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
 - (2)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

8.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·처리절차 등의 적정성(*)
 - (1)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
 - (2)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

Ⅲ. 기타 첨부자료

1. 자체심사 의견
2. 규제의 존속기한
3. 기타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의 의견

※ 작성시 유의사항

-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규제신고 검토의견서

신 고 명		신 고 인	
관련법령			
규제현황			
종합의견 (개선방안)			
규제사무 등록여부			
검 토 자	담당관실 · 과	성명	

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

규제사무명 (건의제목 및 건의자)		관리번호	
자치법규			
소관부서	과장	(직책/ 성명/ 연락처 : 사무실)	
	팀장	(직책/ 성명/ 연락처 : 사무실)	
	담당	(직책/ 성명/ 연락처 : 사무실)	
제·개정	제정일 :		
	최근개정일 :		
검토내용	<p><근거규정></p> <p>○</p> <p><주요내용 또는 건의내용></p> <p>○</p> <p><당초 검토결과></p> <p>○ 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</p> <p><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의견></p> <p>○</p>		
추진일정	<p>○ 개선방안 마련(~0.00.)</p> <p>○ 개정 완료(~0.00.)</p>		

[별지 제5호서식]

규 제 등 록 서

담당부서 :

등록번호		등록일자	
규제사무명			
처리기관			
법 적 근 거	상위법		
	조례		
	규칙		
	고시등		
부문별		유형별	
법령 등 공포일		등록사유	
규정시행, 폐지일		존속기간	
규제목적			
규제내용			
처리기준			
구비서류			
처리절차			
처리기간			
등록이후 변동경과			

[별지 제6호서식]

행정규제사무 목록

연번	규제사무명 및 규제내용	근거규정	정비내용	소관부서	비고